

---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 제28회 임시이사회 회의록

---

2017. 7. 18(화) 07:30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 제28회 임시 이사회

- 일 시 : 2017년 7월 18일(화) 07:30
- 장 소 : 달개비 (중구 정동)
- 재적이사 : 11명
- 출석이사 : 6명
- 출석감사 : 2명

○ ○ ○ 사무국장이 제28회 임시이사회에 성원을 보고하다.

○ ○ ○ 이사장이 인사말에 이어 안건을 간단히 설명하고, ○ ○ ○ 사무국장이 미리 배포된 회의자료를 통하여 주요보고안건에 관하여 설명하다.

- 보고안건**
1. 전차 이사회 회의보고
  2. 당연직임원변경 보고
  3. 2017년 상반기 운영사항 보고

보고사항이 완료되어 이사장이 다음 안건에 관하여 심의를 구하다.

### 제154호 기부금 수령 및 사용 승인의 건/제155호 2017년 사업계획 변경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이사장은 제154호 기부금 수령 및 사용 승인의 건을 상정하다. ○ ○ ○ 부장이 제154호 안건과 관련하여 (주)에듀드에서 저소득가정의 예체능 특기 대학생 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6천만원을 기탁하여왔음을 설명하고, 기부자의 뜻에 맞게 기부금 수령 및 청춘Dream장학금 목적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심의안건 제155호 2017년 사업계획 변경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해 이어서 설명하다. 세부사업계획에 대해 기탁자는 (주)에듀드, 장학사업명은 청춘 Dream장학금, 지원규모는 6천만원, 지원인원은 20명, 선발대상은 저소득가정의 예체능 특기 4년제 대학생, 장학금은 연간 3백만원이라고 설명하다. 2017년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 세입예산 11,821,036,996원에서 기부금수입 6천만원이 증액되어 11,881,036,996원이며, 당초 세출예산 11,821,036,996원에서 사업비 6천만원이 증액되어 11,881,036,996원임을 설명하다.

이사장이 기부금 수령 및 사용 승인의 건 및 2017년 사업계획 변경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해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54호 및 제155호 안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156호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은 제156호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 사원이 직제 및 정원 규정 개정을 통해 사무국 조직을 재정비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개정취지를 설명하다. 직제 및 정원규정 제5조 제1항의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한다.』는 규정을 직원의 직종 중 기능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통일하여 재단 인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하며, 대외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직원의 직급별 직위를 부여하고자 하여,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으로 두며, 직원의 직급 및 직위는 <별표3>과 같다.』로 개정하고자한다고 설명하다. 별표3은 신설되는 사항으로 직급 및 직위표이며 1~2급 사무국장, 3~4급 부장, 4~5급 차장, 5~6급 대리, 6급 주임 이라고 설명하다. 제6조 <별표1>정원표의 기능직을 기능직이 폐지됨에 따라 정원표에서 삭제하고자 하며, 제8조 <별표2>기구표의 사무국 1명, 총무부 4명, 사업운영부 3명 표기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이사장이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56호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157호 사무위임 전결규정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은 제157호 사무위임 전결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 사원이 지난 2월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에서 『투자, 출자·출연기관 규정 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가 5월에 재단으로 통보되어 재단 사무위임 전결규정을 개정하고자함을 설명하다. 사무위임 전결규정 제5조 제1항 <별표>에서 이사회 및 각종위원회운영과 관련하여 안건결정이 사무국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규정과 일치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운영하도록 규정을 통일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이사장이 사무위임 전결규정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해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57호 사무위임 전결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158호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이 제158호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 사원이 서울시의 규정 정비 컨설팅 결과 및 인사규정과 관련된 법규를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 하고자 한다는 개정취지를 설명하다. 제10조 (채용구분) 제1항 『재단 직원은 일반직원과 기능직원으로 구분하여 채용한다.』는 규정을 직제 및 정원 규정에서 기능직이 폐지됨에 따라 『재단 직원은 일반직원으로 채용한다.』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제11조(채용방법) 제1항은 서울시 감사담당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재단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총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제12조(응시연령)은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삭제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제13조(결격사유) 제1호에 대해 민법상 무능력자 제도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제16조(신원보증) 제1항에서 직원의 신원보증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재단 직원 중 재무회계규정 제5조에서 규정하는 회계관계자는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신원보증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제28조(승진소요 기간) 제2항 제1호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포함하여 『제32조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제34조(휴직자의 대우 및 복직) 제2항은 근로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일정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제32조 제1항제4호의 경우는 3개월까지만 산입한다.』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제37조(당연퇴직) 제1호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인장하는 당연퇴직사유는 당사자 사망, 정년도달,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이므로 재단의 규정을 상위 법령과 일치하게 『제40조 규정에 해당되는 때』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제40조(정년)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직제 및 정원규정에서 기능직이 폐지됨에 따라 기능직의 정년규정을 삭제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제48조(징계양정기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언어폭력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징계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하라는 시 경영혁신 평가과제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이사장이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묻다.

○ ○ ○ 감사가 제48조와 관련하여 일반폭력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이 어떠한지 묻다.

○ ○ ○ 사원이 신설하고자하는 언어폭력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수위라고 설명하다.

○ ○ ○ 감사가 언어폭력이 일반폭력보다 강하게 설정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이 신설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언어폭력 기준설정자체가 애매모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권, 징계권을 자칫 남용할 우려가 보이며 언어폭력을 추가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일반폭력과 의 형평성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다.

이사장이 징계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할지 묻다.

○ ○ ○ 감사가 서울시는 포괄적으로 폭력가혹행위로 규정되어있으며 언어폭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화 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한다.

○ ○ ○ 이사가 다른 출연기관은 어떤지 묻다.

○ ○ ○ 사원이 이 사항은 경영혁신과제이므로 개정되어 있는 출연기관이 많다고 말한다.

○ ○ ○ 감사가 경영혁신과제 주체가 어디인지 물으며 취지는 성희롱에 대한 언어폭력이 아닐까 추정 된다고 말한다.

○ ○ ○ 사원이 2015년 시장님 방침으로 진행된 경영혁신으로 주체는 시 공기업담당관이라고 말한다.

○ ○ ○ 감사가 성희롱 중에 언어폭력이 많으니 성희롱을 전제로 한 언어폭력이 아닌지 생각이 든다 고 말한다.

○ ○ ○ 이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언어폭력만 징계한다는 것이 어색하다고 말한다.

이사장이 성희롱에 언어폭력행위 포함이라고 하면 징계수위를 맞추면 될 듯 하고, 일반적인 언어폭력으로 말한다면 일반폭력 가혹행위기준에 맞추는 것이 맞을 거 같다고 말한다.

○ ○ ○ 감사가 별표1은 일반적인 언어폭력으로 볼 수 있고 별표2는 성희롱안의 언어폭력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표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 ○ ○ 이사가 언어폭력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말로 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성희롱과 언어폭력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며 언어폭력은 성희롱은 아니지만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이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며 성희롱에만 한정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한다.

○ ○ ○ 이사가 법률에서는 언어폭력도 폭력에 포함해서 다룬다 라고 말한다.

○ ○ ○ 이사가 언어폭력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진일보해서 세분화 되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행위를 근절한다는 의미에서 좋게 생각된다고 말한다.

이사장이 제48조(징계양정기준)는 사무국에서 좀 더 검토한 후 추후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어떠한지 의사들에게 의견을 묻다.

이사들이 동의하여 제158조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제48조 징계양정기준을 제외한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8조는 사무국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일부 의결되었음을 선포한다.

### 제159호 복무규정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이 제159호 복무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 ○ ○ 사원이 시 공기업담당관의 규정 정비 컨설팅을 반영하여 복무규정을 개정하고자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하다.

제20조(연가일수) 제3항의 연가일수 규정의 내용과 표의 불일치하는 사항을 규정의 내용에 맞게 표를 『1년 이상 ~ 21년미만, 21년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제23조(연가일수의 공제) 제1항에서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을 산정과 관련하여 제외시키는 것으로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연가산정일수에서 공제한다.』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제26조(특별휴가) 제5항 임신 중인 직원의 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의거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자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를 신설하여 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이사장이 복무규정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59호 복무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160호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이 제160호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 사원이 시 공기업담당관의 규정 정비 컨설팅 및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보수규정을 개정하고자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하다.

제5조(연봉계약 체결) 제2항 <별표3>의 연봉계약서에서 시 갑을관계 혁신대책 중 갑을용어를 삭제하라는 정책을 반영하여 『갑』은 『계약자』로, 『을』은 『계약상대자』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제7조(기본연봉의 한계액) <별표1>에서 기능직 폐지에 따라 연봉한계액표의 기능직을 삭제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제13조(징계처분자등의 연봉)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규정의 제한)에 의거 『1.강등은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중 월 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로 하며, 감봉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월 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로 하며, 감봉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제17조(부가급여) <별표2>부가급여 지급표에서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을 준용하여 『지급액 1. 배우자 4만원, 2. 자녀 첫째자녀 월2만원 둘째자녀 월6만원,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기타 부양가족 월 2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또한 기능직 폐지에 따라 기능보조수당을 삭제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이사장이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0호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이사장은 이상으로서 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2017년 7월 18일